관리단체 운영규정

제정 2021. 02. 26.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문경시체육회(이하“본 회”라 한다)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회 회원종목단체(이하“종목단체”라 한다)와 읍·면·동 체육회(이하“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본 회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당해 종목단체 및 지회에 즉시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 받은 당해 종목단체 및 지회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종목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본 회가 관리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관리단체의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이하“관리단체 및 지회 관계자”이라 한다)는 종목단체 및 지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관리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종목단체 및 지회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 회는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본 회 회원 종목단체 및 지회로 서의 권리를 회복케 한다.

제5조(종목단체 및 지회 관계자 의무 등) ① 종목단체 및 지회 관계자는 관리단체로

서 본 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각종의사 결정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 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 및 지회 관계자는 본 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종목단체 및 지회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한다.

④ 종목단체 및 지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 종목단체 및 지회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 및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종목단체 및 지회규정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정관이나 상급단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